

제315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30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66.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된 안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5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5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
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

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주승용·김동철·이낙연·김성곤·우윤근·김우남·김재윤·문병호·김영록 의원 발의) 17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21
2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김관영·홍의락·박완주·우윤근·이종걸·김동철·배재정·인재근·백재현·한명숙·최동익·김영록·전순옥·김영환·조경태·노영민·이원욱·김민기·이목희·추미애·부좌현·전정희·윤관석·최민희·장병완·이춘석·홍종학·박주선·강창일 의원 발의) 21
2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1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1
26.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김정록·손인춘·한기호·김진태·김기선·염동열·김동완·박성호·황진하·정희수·김재원 의원 발의) 22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2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헌·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 22
1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이인영·안민석·김춘진·유승우·이상직·김우남·강창일·윤관석·김성곤·전해철·정호준·신경민·배기운·전순옥 의원 발의) 22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2
5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25
5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심상정·배재정·배기운·김윤덕·윤관석·홍영표·우원식·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25
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석훈·홍지만·문대성·강은희·민현주·이자스민·민병주·신의진·이완영 의원 발의) 25
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이철우·김태원·권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25
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5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5
1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헌·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7
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성찬·김정록·강창일·민홍철·이한성·안홍준·이만우·강은희·주영순 의원 발의) 28
4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경대수·김상민·김성태·민홍철·박성호·서용교·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28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4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47
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양승조 · 남인 순 · 김용익 · 김성주 · 이언주 · 최동익 · 김미희 · 이목희 · 이학영 · 전순옥 · 김승남 의원 발의)	47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우윤근 · 김영환 · 최재성 · 김승남 · 박홍근 · 박완주 · 양승조 · 정호준 · 강기정 의원 발의)	48
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 · 이인제 · 이낙연 · 김정록 · 홍지 만 · 이명수 · 이자스민 · 김영주 · 안홍준 · 김희국 · 심학봉 · 문대성 · 류지영 의원 발의)	48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최동익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 철 · 전해철 · 홍종학 · 이한성 · 안홍준 · 유재중 의원 발의)	48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이낙연 · 임수경 · 배기운 · 유대운 · 조정식 · 최규성 · 박남춘 · 김상훈 · 김세연 · 남인순 · 최원식 · 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53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양승조 · 남인순 · 김용익 · 김성주 · 이언주 · 최동익 · 김미희 · 이목희 · 이학영 · 전순옥 · 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54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우윤근 · 김영환 · 최재성 · 김승남 · 박홍근 · 박완주 · 양승조 · 정호준 · 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54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최동익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 철 · 전해철 · 홍종학 · 이한성 · 안홍준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4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4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이낙연 · 임수경 · 배기운 · 유대운 · 조정식 · 최규성 · 박남춘 · 김상훈 · 김세연 · 남인순 · 최원식 · 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56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6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56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56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8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김기선·유승우·박
 덕흠·金永柱·윤재옥·황영철·고희선·강기윤·이찬열·유대운·백재현·박남춘 의원) 58
 66.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8
 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8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
 표발의)(박덕흠·김세연·유일호·안홍준·한선교·김용태·신동우·윤상현·이우현·정두언·
 송광호·李宰榮·박대출·김동완·이노근·주영순·정우택·박창식 의원 발의) 59
 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영록·노철래
 ·김춘진·정문헌·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주영순·정희수·하태경 의원 발의) 59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9
 2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유대운·김승남·김성곤·
 이윤석·민홍철·배기운·신장용·박기춘·정청래 의원 발의) 60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현승·이명수·이종진·함
 진규·홍문종·이이재·이노근·윤진식·김태흠 의원 발의) 60
 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
 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65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오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례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 국무회의는 화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회의를 어제에 이어서 하게 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소관 국무위원들이 출석해야 하지만 장관 대신 일부 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계속)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류했었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동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금융위원장님, 어제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름대로 보완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어제 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 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킹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킹보안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갱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다든지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채널, 그러니까 해킹이 이루어지는 PC에서 떨어지는 어떤 문자메시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3자에 의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가 그것을 공모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시행령에다가 고의·중과실의 범위에 그러한 것을 추가함으로써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 그러면 그 준비한 내용이 시행령에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제2소위 회부 주장은 철회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도급법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권성동 위원 과징금 제도는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외국 입법례에 과징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동시에 채택한 그런 외국의 입법례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이 문제는 제가……

○권성동 위원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사실 법 체제 가지고 대륙법계, 영미법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게 왜 의미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그것은 있지만 특정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 상황에 맞게……

○권성동 위원 그러면 다른 입법례는 양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서 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

씀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그건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2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사실 하도급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제재를 하고 그리고 행정제재에서 잘하면 형사제재까지는 가지만 민사소송제도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만 원고하고 피고하고 민사로 다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하도급이 워낙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10개 행위 중에 이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 3개가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그러니까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납품 거절 그리고 부당 반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성동 위원 그 입증책임을 지금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원칙은 소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예요.

그래서 그 입증책임을 전환이 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아주 부족하거나 또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컨대 의료과오소송 같은 경우에 의사는 의학 전문지식이 있고 환자는 의학지식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탈취범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은 특허라든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이 경우에 납품단가 후려친다든가 또 부당 납품 거절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입증책임 전환을 공정거래위원장도 찬성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입증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된 사실하고 손해액, 인과관계, 고의·과실…… 그런데 지금 고의·과실 분야만 입증책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성동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모든 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제법,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의 경우는 사실 고의·과실이 대부분 웬만하면 인정이 됩니다. 다른 민사하고 달리.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피고가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원고한테 고의·과실을 입증하게 하면 오히려 원고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원고를 도울 수도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고의·과실이 당연히 있는 걸로 대부분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원고가 대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의·과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료를 원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한번 대응을 해 가지고 이런 게 없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게…… 피고가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입증하게 하면, 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법 집행이 사실상 안 된다…… 그래서 기술탈취의 경우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현행 있는 규정도……

○**권성동 위원** 그런데 기술탈취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요.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납품 거절 이런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답변에 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도급법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을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볼 때 취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거래하는 게 모든 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거래가 아니고 중견기업과 정말 영세한 기업 간의 거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씀인지 알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김도읍 위원**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과 영세기업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볼 때는 대기업을 보는 시각과 중소기업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중소기업들, 그런 측면에서는 운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쪽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할 때 하도급하고 원도급 이걸로 되어 있지,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원도급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래가 많다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많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해 가는 것도……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저희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법원에서도, 이 법안에도 있습니다마는—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과징금, 벌금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벌적 제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도 그런 걸 감안해서 판결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공정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저희도 당연히 심결을 할 때는 그런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할 거고요.

○**김도읍 위원** 금융위원장님, 자본시장법이 지금 한국거래소가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근거 법이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ATS, 대체거래시스템요.

○**김도읍 위원** 지금 한국거래소가 57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경쟁인데, 57년간 독점체제로 해 왔던 이 법이 이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들어서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변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독점으로 유지를 해 오다가 이제 효율성을 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ATS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기업으로서, 공기기업으로서 있다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공기기업성이 배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좋지만 상호간의 어떤 교차적인 의견 수렴도 한번 거쳐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낸 지가 한 2년이 넘었고 또 ATS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ATS가 지금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ATS가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의 지배구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공성을 따로 떼어 내서 시장감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독립하는 문제 등을 필두로 해서 아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자본시장법이, 이 법이 각기 이해가 그래도 상충되거나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 그렇다면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접점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더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ATS 정착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3항 자본

시장법은 소위에 넘겨서…… 지금 57년간 독점체제에 있던 게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이 법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무위에서 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하나씩 양보해 가지고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고치려면 민주당에서 지적한 어떤 다른 부분을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소위에서 한번 더 재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김도읍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이어서 정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 조항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징적으로 저희가 이게 또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도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개하도록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이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이 끝나서 넘어온 부분을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의 범위를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6인 협의체의 공통 입법의체로서 논의가 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온 법인데, 어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때문에 또 논란이 돼서 정회가 됐는데 이 법도 또 이렇게 해서 소위로 회부하자고 하면 어제와 같은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춘석 위원** 금융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위원장 박영선**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거래소 인허가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법률 하나가 정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논의가 됐었고, 특히 정무위원장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라고 한 부분이 부산 지역이, 부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그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는 논의가 상당히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금융중심지법이 부산에다가 금융중심지 특구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거에 반대했던 법인데 양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자본시장법이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쪽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하나씩 양보해서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시고 이춘석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식의 절충을 했기 때문에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이춘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5억 원 보수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지 복수거래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정무위원장과 아침에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보자는……

○**위원장 박영선** 제가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복수거래소 설치 문제는

정책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2소위로 보내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권성동 간사님하고 어떤 의견 교환을 했다면 정무위원장이신 김정훈 위원장님이나 김도읍 위원님이 다 부산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입장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무위원회에서 김정훈 위원장님이 이걸 방망이를 두드려서 법사위로 보내는 데는 그만큼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뚜렷하게 이것을 반대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성동 위원님한테 법사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걸 존중해 드리는 차원에서 어저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해칠 위원님과 권성동 위원님의 견해가 달랐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시키고 김도읍 위원님하고 금융위원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오늘 법사위가 조금 길게 진행이 될 테니까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계류시키는 걸로.

○**금융위원장 신제윤** 제가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래서 어저께처럼 김도읍 위원님의 우려를 시행령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위원장님께서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1항과 2항은 일단 지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서 김도읍 위원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 주시고요.

잠깐만 앉아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잠깐 이석하시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우선 지금 법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그렇고 양심적인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부패 취지 차원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법사위에서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게 공정위 안에서 4대강 관련해 대기업들의 담합,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담합이 밝혀졌잖아요, 공정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그게 밝혀졌었는데 사실 발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든—고발자라는 표현 보다는—정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기발령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왜 대기발령이지요? 일을 해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그게 검찰에 이 사건이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수사 중일 때는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인사규정이.

○서영교 위원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낼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찰에서 좀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은데 공무원을 월급 주면서 계속 대기만 시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되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면 그냥 그대로 대기만 시키면 되겠느냐…… 다른 일을, 업무를 부여하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라고……

○서영교 위원 그 당시에 그 정보를 내게 된 것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가지고 담합한 것을 밝혀낸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아마 그 건인지 뭔지는, 이것하고는…… 여러 건이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서영교 위원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부분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당거래라든지 그리고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들이 하고 나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직업도 잃고 해임당하고 파면당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언제 경제민주화가 되고 언제 내부적인 부패가 없어지겠습니까? 사실 그 고발이 일찍 있었다면 2차 대기업 간의 담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담합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2차 담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사람들의…… 내부고발을 하는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같은 직원끼리 하고 있는 것들을 할 때, 그렇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어찌면 과거로 치면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법개혁특위의 최고쟁점이 반부패입니다.

저는 대기발령자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대기발령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건 일을 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을 공정거래위에서부터 공정하게 해 줘야 다른 곳에서도 양심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사회는 투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하여튼 팩트 자체부터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들이 서로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들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하는데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진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셔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박지원 위원 18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주회사 문제로 말이지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또 업계에서

도 했는데, 그 공정거래법이 왜 통과가 안 됐느냐 하면 지주회사로 변경하는데 모 재벌이 과징금을 내야 돼요. 우리 계산에 의하면 200~300억 정도가 되고 자기들 주장에 의거하면 100~15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50억 정도 과징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모 일간지에 보면 그 대기업에서 ‘공정거래법 이걸 해 주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은 저는 정당한 방법이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대기업이 자기의 과실이 있는데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200억 정도 과징금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원내대표로서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배임행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잘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무슨 말씀인지……

○박지원 위원 그 법안에 과징금 내게 되어 있으면 과징금 내면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거 고려를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도급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시간제한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께 인사드리고 법안을 상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안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법을 정비하는 조세법령 새로쓰기사업의 일환으로 복잡한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어려운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 기산점을 분명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5항·제7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희선 위원** 기재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게 지금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하고 관련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도소득세 면세조치 소급하는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재위하고 안행위에서 4월 1일 자로……

○**김희선 위원** 아, 둘 다 같이 조정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국가재정법 개정안(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30일 정도 당겼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편성 제출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권리이고, 그래서 헌법에 예

산안 제출시기를 정한 것은 정부의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시기를 헌법에 규정한 것보다 앞당기는 것은 헌법의 명문 및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처음에 62년 헌법 개정 시에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최초로 규정했다가 72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0일을 120일로 앞당기는 것은 결국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또 과거 헌법 개정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기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0일 단위로 2016년으로 당기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신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 법안을 기재위하고 할 때 장관님 가서 충분히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니까 전임이 하셨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제가 오기 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먼저 이 취지를 아십니까?

국가재정법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 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동안 죽 운영해 왔던 제도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안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그 날짜를 촉박하게 해 왔던 관계로, 그래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보자 해서 이 개정안이 된 것 아닙니

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당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이런 지적이 있지만 방금 말했던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사위에 와서 그때 공식적인 충분한 검토의견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다시 한번 소위나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라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전해철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적하신 심도 있는 분석이라는 필요성과 두 번째는 이게 법적으로 헌법하고 법적인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상충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갈리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당기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쪽에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 그런 세 가지가 고려돼서 아마 기재위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논의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3년 기한도 두면서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 기재위에서 충분히 합의되고 이야기됐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기재위에서 ‘10일·10일·10일’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들께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는 혹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위에서 논의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해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요.

○전해철 위원 다 이야기가 돼서 넘어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위에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선**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90일 이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의 침해라는, 위헌이라는..... 120일 이전까지로 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견해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사실 법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히셔야지요. 왜냐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셔서,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면에서.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달리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마치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이나 아니냐는 분명히 나눠져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위반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위반이 아니라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아닌 기관에서 편성하는 것을 막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90일 이전에 헌법, 그러니

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90일 이전에 포함한다면, 120일 이전에 좀 빨리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내에 포용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부총리께서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헌법 위반이 아닌데 업무 편의를 위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소위로 가 봤자 사실은 논의할 게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선 법률적인 그런 데 대한 저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것은 제가 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과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법률에 관한 것은 법률 전문가들께서 좀 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최원식 위원 아니, 주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은 분명히 밝히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법적인 판단을, 제가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법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제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말씀의 포인트는 혹시, 법사위에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제기돼서 한번 더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데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이춘석 위원님이……

○위원장 박영선 예, 노철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춘석 위원 국가재정법에 관해서 제가 안을……

○최원식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박영선 예, 최원식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원식 위원 예산안 제출을 90일 이전에 하라는 취지는 국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보다, 예를 들면 60일로 낮춘다, 40일로

낮춘다 이것은 심의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험이지만 오히려 심의권을 보장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시기로 늦추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항 자체가 편성권을 보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회 심의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또 국회의 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가재정법,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헌법·국회관계법의 20페이지에 보면 제54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고요.

또 지금 최원식 위원님께서 마이크가 꺼져서 아마 이것이 방송이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면 이것이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일찍 제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의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명확히 헌법에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법률로써 120일까지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법을 굳이 이렇게 해 갖고 헌법적인 논란을 안 일으켜도 될 법이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고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2소위로 회부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제부하고 논의를 하면 사실은 위험성에 대한 시비도 피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

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 방법을 저희가, 여기서 계속 ‘넘기자’, ‘넘기지 말자’ 논의를 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철래 위원님!

○전해철 위원 동의하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추가로 우리 전문위원분들이 일단 위헌 소지에 대해서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검토의견서를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저는 법적인 문제—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위헌성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부총리님의 소신에 관한 문제가 의문스러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해서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도 전혀, 예를 들어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또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심의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됐을 건데, 그때 또 충분한 답변을 하고 했을 건데 여기 와서……

저는 소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법사위에 올라왔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인정을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지 주무 장관이 와 가지고 ‘소위로 넘겨서 법률적인 문제를, 나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 선후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본인이나,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소위까지 넘겨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제가 보고받기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특히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 지식의 범위 내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다뤄 보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해 드린 겁니다.

○노철래 위원 여기까지 오실 때는 언제고 확실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오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야지 ‘여기에서 해 주는 대로 하겠다’ 오히려 또 ‘소위에 넘겨 달라’ 이런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 무소신 같은 것으로 비쳐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헌법 54조2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보면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은 말 그대로 최후 시점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그보다 앞당기는 것은 전혀 헌법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법 조문을 국어의 문맥으로 이해를 해 보면 90일이라고 하는 시점 뒤로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헌법과 충돌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당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300일 전에 하더라도 헌법 위반 아니에요?

○서기호 위원 헌법과 충돌은 안 되지요.

○위원장 박영선 이것은 기획재정부장관님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서기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특히 제3장 국회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이춘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요, 이것을 헌법 위반 소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기재부의 의지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계류시키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은 조금 소홀하게 검토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영선**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것 관련된……

○위원장 **박영선** 먼저 답변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아까 김희선 위원님께서……

○김희선 **위원** 4월 1일, 4월 22일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질의하신 4월 1일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지금 안행위에서 취득세 관련된 발효 일자는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기재위에서 지금 올라간 양도소득세 관련된 것은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양자 간의 발효 일자에 관한 것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권성동 **위원** 4월 1일 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춘석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4월 22일로 하는 것하고 4월 1일로 하는 것하고?

○위원장 **박영선** 이것이 한시법이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희선 **위원** 4월 1일로 통일을 해야지.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일단 어쨌든 국가재정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이 2개는 일단 계류를 시키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행위에서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황 파악을 하고 다른 법안을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현재 발효 시점에 관한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을 어떻게 발효 시점을 고쳐 달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취득세는 지금 현재 안행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이 4월 1일로 돼 있고요, 발효 시점이. 지금 조세특례법안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4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있듯이 2013년 4월 22일이고요. 그래서 처음 초기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4월 1일, 4월 22일.

○권성동 **위원** 그러면 조세특례법을 4월 1일로 바꾸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러면……

○위원장 **박영선** 아니, 그런데 장관님 의견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안행위에서도 틀림없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안행위 위원들도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보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나오셨으니까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이것을 지금 한시법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법을 계속 한시법으로 해 주면 마치 무슨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국민들에게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정책이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양도소득세 문제도 요즘 보면 60세나 65세가 넘어서 직업이 없는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못 판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차라리 예를 들면 60세나 65세 넘는 분들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 준 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누구나 국민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0분)

○위원장 박영선 잠시 장내 정리를 하는 사이에 의결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추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안행위에서 올라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를 감안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주승용·김동철·이낙연·김성곤·우윤근·김우남·김재운·문병호·김영록 의원 발의)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8항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무회의 관계로 교육부 나

승일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조현재 차관님 이신가요? 참석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번호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도입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 외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대안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중 이자면제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대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반상환 학자금제도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게 되는 일반상환 학자금제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등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부칙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서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 위원님!

○김희선 위원 문화부차관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 등급분류 기관을 이원화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게임물등급위원회 하나 있던 것을 청소년 관련 등급분류 기관하고 전체 게임물등급위원회,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자기들이 만든 게임물을 어디에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기준을 매년 명확하게 설정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이 게임물이 청불 게임인지 아니면 청소년이용가 게임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청불 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리위원회에서……

○김희선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민간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간 등급분류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예.

○김희선 위원 그리로 갔다가 거기서 이게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

게 해서 두 군데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런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김희선 위원 지금 이 등급위원회에 국고 지원이 1년에 얼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작년에 54억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고지원 예산이 이 게임산업법에 관한 정부안과 또 의원님 안이 합의를 보지 못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로 있고요. 이번에 이 대안이 통과되면 올해 운영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 54억 정도.

○김희선 위원 1년에 54억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런데 원래 이걸 한시법으로 만든 건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법은 한시법이 아니었고요.

○김희선 위원 지원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등급분류하는 부분만 한시적으로 해서 민간 자율기구로 넘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케이드게임의 사행성 부분이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9세 이상의 청불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등급분류를 해야, 우리나라의 사행성 문제는 아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청불 게임 이외에는 민간 등급분류 기관으로 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급위원회 폐지하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

부칙 4조 있나요? 봐 보시지요.

폐지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지금 직원의 고용 승계는 의무사항으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안과 또 의원님 제출안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청소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좀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를 쇠신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사후관리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그런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인적 승계 외에 나머지 재산권리라든지 다 승계를 하고 인적 승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고용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크게 문제없는 직원들은 저희가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위원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낮게 관리위원회로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쇠신하는 것은 맞는데 또 그런다 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을 모두 다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방금 차관계서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하게 인적 쇠신이 필요하지 않는 한은 고용 승계를 해서 까닭 없는 불안감을 주지는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법안에 그걸 넣으라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차관계서 또 문화부에서 책임지고 잘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간단하게 30초만……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교육부차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간단하게 지적이 됐는데 학자금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면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

고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검토보고에 하는데 다른 입장이 됩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에 대한 것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것이 저희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노철래 위원 기재부는?

○교육부차관 나승일 기재부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이견은 어떻게, 조율이 됐어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이것은 저희가 교문위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해서 병역의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자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상임위 만장일치로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게 교문위고 그러면 기재부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까 해소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기재부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차관 나승일 기재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그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든든학자금에 따른 이자 부담은 연간 약 67억이 소요되는데요. 이 든든학자금에 따른 이자 지출은 지난해부터 이미 확보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에 규정으로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5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재정 지원 안해 주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철래 위원** 대책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계속 거부를 할 경우?

○**교육부차관 나승일** 하지만 헌법에 기초한 제 39조제2항에 의해서 교문위 상임위원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뭔가 좀 애매하네……

이것은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 법사위까지 올라올 때,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아, 이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가지고 와야지 지금 계속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해소 방안도, 만약에 기재부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물어도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헌법에만 그렇게 보장돼 있다는 그 말씀만 하시는데……

○**교육부차관 나승일** 동시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이미 대국민에 대한 약속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서 이것도 동시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기재부한테 그걸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노철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그런데 우선 이 법안은 여야가 다 합의했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이에요,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다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면 기재부가 쫓아 와야지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지금 노철래 위원님 말씀처럼 작업을 더 열심히 하셔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처럼 이자 지원이 57억 정도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이 부담을 57억

으로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신껏 가시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이겁니다.

대학생들 이 학자금 대출 받게 하고 이자 몇 %입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2.9%로 사실상 시중금리를 따르면 0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2.9%면 2.9%이지 시중금리로 따지면 0에 가까운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2.9%는 2.9%이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영교 위원** 이번에 2.9%이지만 그전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였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3.9%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3.9%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인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6.6~7.8% 고정금리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2.9%, 전체 이율이 낮아져서 2.9%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았더니 학자금의 이자를 다시 정부에서 통장으로 넣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자를 내게 해 줬습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부담 갖게 하면서 지금이나 2.9%이지 19% 7~8%, 저는 이자 부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법안이 나온 것도 저는 시대가 역행하고 거꾸로 갔다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이 봉입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봉도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들은 고통스러운데 이자를 주느니 마느니, 지금 여야협의체에 의해서 된 것이니 저는 당연히 이것은 이번에 통과되고 교육부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될 게 대출금만큼은 만성적으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몇 년의 상한을 정해 놓고 대출금 이자만큼은 저는 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것을 대신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 두 분은 이따가 기재부장관님 오시면 이 부분

에 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노철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12시부터 이라크와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으셔서 가지고 의사일정을 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2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김관영·홍의락·박완주·우윤근·이종걸·김동철·배재정·인재근·백재현·한명숙·최동익·김영록·전순옥·김영환·조경태·노영민·이원욱·김민기·이목희·추미애·부좌현·전정희·윤관석·최민희·장병완·이춘석·홍종학·박주선·강창일 의원 발의)

2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6.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디자인의 창작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윤상직 장관님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한정화 청장님이시지요?

○중소기업청차장 김순철 지금 청장은 국무회의 끝나고 오시는 중이어서……

○위원장 박영선 아, 그러면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소기업청차장 김순철 예.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특허청의 김영민 청장님?

○특허청장 김영민 예.

○위원장 박영선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 중 2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약칭을 수정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표현을 간결히 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률안과 같이 심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정부 제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특허청장이 등록출원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일을 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특허청장의 인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출원서가 도달하면 그날을 출원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그 밖에 출원서의 보완 명령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각 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회의 때문에 장관님들이 오신 분들이 있고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장관님들이 오신 부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너무 바꾸면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원장 박영선 예, 그럴 것 같아요.

1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김정록·손인춘·한기호·김진태·김기선·염동열·김동완·박성호·황진하·정희수·김재원 의원 발의)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헌·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

1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이인영·안민석·김춘진·유승우·이상직·김우남·강창일·윤관석·김성곤·전해철·정호준·신경민·배기운·전순옥 의원 발의)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 할 순서이지요.

의사일정 제12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금 외교부차관이 나오셨지요? 김규현 차관이 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위원장 박영선 김규현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발급 신청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및 대법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도로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를 연계 시스템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을 통해 안전행정부 및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권발급 신청인의 도로명 주소 등의 전산정보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신청서에 자동 입력됨으로써 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여권발급 신청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이 자리에 오늘 개성공단 관련 협의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차관님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 외교부 김규현 1차관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고요.

통일부 김남식 차관님 어디 계신가요?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님, 그리고 병무청의 박창명 청장님,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성욱 사무처장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통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 중 2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지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10·27법난과 관련해서 정갑윤 의원 등 열세분이 발의한 안이 수정되어서 왔어요. 수정되어서 올 때 여기에 보면 제3조의2(사무처)…… 지금 10·27법난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법난 피해자들을 구제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에

게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난번에 국방부장관 오셨을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도 위원장의 직인을 마음대로 간사가 찍는다든지 이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고 있지요? 직인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는 것도……

○국방부차관 백승주 마음대로 찍는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위원장 입장에서 업무 개선을 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법제처·안행부 모든 곳의 해석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지 않게 제가 개정을 요구했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의원들이 낸 안에는 ‘사무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면한다’, 실제로 10·27법난 같은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조사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의한 바가 있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 부분을……

○서영교 위원 조계종 측이랑 논의를 하신 건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조계종 측에서 요구한 것하고 좀 달리 정부에서 그런 관례를, 선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직인을 마음대로 찍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을 임면하거나 그래서 문제를 지적했고 그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조계종과 상의하지 않고 정갑윤 의원이 내신 안은 별정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조계종하고 이번에 낸 수정 법률안에, 조계종 측이 그날 법사소위에 나와서 충분히 논의되어, 상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 조사위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정직이 가서, 그것을 담당하고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나 대신할 사람들이 사무처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별정직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무원으로 하면 그전에 문제점 제기한 것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국방부차관 백승주 이 부분은 조계종에서 나와서 그날 법사소위에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합의된 부분을 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몇 항인가요?

○서영교 위원 15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15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이 부분을 2소위로 넘길 만큼은 전혀 아니고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원래 정갑윤 의원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정갑윤 위원님하고, 소위를 거치면서 조계종 관계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확인하는 방법……

○위원장 박영선 정갑윤 위원님이 아마 오후에는 오실 겁니다. 어차피 법사위 상임위를 오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갑윤 위원님도 이 법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셨고 또 저한테 오늘 오전에 참석 못 하니까 이것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따 정갑윤 위원님 오시고 나서 그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철래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 법안을 2소위로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장 박영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자들이 합의한 부분이, 합의 과정을 확인 받고 싶으신 것 확인하고……

○서영교 위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유를 뒤야지 그 조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요 정갑윤 위원님 오시면……

국방부차관님이시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위원장 박영선** 그것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철래 위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노철래 위원입니다.

평통 사무처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때문에 부의장 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되는 안인데 여기에 겹쳐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변동이 상당히 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평통이 구성될 때 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수가, 그 이후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수 만들어진 데 머물러 있어요. 이것 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평통자문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안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 이번 16기가 7월 1일 출범하는데 존경하는 노철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자문위원 수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안을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 기초단체의, 진짜 평화통일을 자문하는 위원들인데 그런 분들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자문위원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오셨습니다. 이제 국무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이제부터는 차관 출석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17항 이 두 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서영교 위원님과 정갑윤 위원님께서…… 국방부 백승주 차관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의 요구 사항이 법에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이것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4항, 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5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심상정·배재정·배기운·김윤덕·윤관석·홍영표·우원식·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석훈·홍지만·문대성·강은희·민현주·이자스민·민병주·신의진·이완영 의원 발의)

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이철우·김태원·권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영선**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5항 여

성가족위원회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관계로 장관님께서 오신 부서가 있고 안 오신 부서가 있어서 장관님이 오신 부서를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종합 요약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동 관계로 유인물에 번호가 다르게 기재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56항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청소년단체 임원 자격의 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서 결격 사유의 규율 대상인 임원의 범위를 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도 포함시키는 등 일부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7항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인바 일부 조항의 표현을 고치고 명확히 수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등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제목을 고치고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공

개모집’ 등의 자구를 삭제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59항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대안)입니다.

국토대장정과 같이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해 규정하여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자의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관한 개념 정리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고,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규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문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선 위원님!

○**김희선 위원** 여가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한테 건강검진을 한 달 이내에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유사 법률, 예를 들어서 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유사 법률을 보면 의로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대부분이예요, 다른 법률에는.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검진이라고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운선** 저희가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폭력의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확인한 신체상의 피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확인하게 신체상의 피해가 보이고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주 꾸준히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김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노철래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가 파악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시설이 지금 9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96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96명 정도로……

○노철래 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100명 내외 정도가 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아닙니다. 피해 여성은 8명에서 10명 정도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피해자들의 건강검진뿐이 아니고, 정신적·심리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맞습니다.

○노철래 위원 단순히 입소시키고 건강검진하는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또 이런 피해 상담을 해 주는 상담치료사 그리고 이런 의사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가장 먼저는 상담을 받아서 정신치료를 해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본인들의 직업교육이나 자활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 효과가 좋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폭력 피해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게 지나가면 본인이 자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치유 기간이 끝나면 본가로 귀환하는 그런 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굉장히 낮습니다.

○노철래 위원 낮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왜냐하면 피해 시설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이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들은 상당 부분이 그 피해 여성들을 찾아서 다니고 또 피해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조차 노출시키면 찾아와서 협박하거나 가해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듣기로는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 입주하고 있다가 재판상의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다음에도 만약에 가해 남성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해 다니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설에서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추적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후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 10·27법안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현·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1시20분)

○위원장 박영선 조금 전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것이 정갑윤 위원의 의사가 다 반영이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교 위원 정갑윤 위원의 의사가 다 반영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조계종과 논의가 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정안은 안규백 의원이 내신 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갑윤 위원하고는 제가 통화를 못 해 봤고요.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협상이 있었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계종에서도 받아들인 안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조계종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성찬·김정록·강창일·민홍철·이한성·안홍준·이만우·강은희·주영순 의원 발의)

4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경대수·김상민·김성태·민홍철·박성효·서용교·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확실히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가 65세 이후에 실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재 예방 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항의 번호에 변경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중교통차량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이미 개정되어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용어와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마이크 볼륨을 조금 키워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용 제정안은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권고하여 원장이 해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외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위원회 대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법률의 시행일을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위원회 대안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분명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위원회 대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제정안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신고의무 불이행, 행정명령 위반 등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일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유형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종합하여 보면 부당이익의 발생 자체가 불법성의 중심이 되고 이러한 부당이득을 벌금을 통해서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각종의 신고의무 불이행, 행정명령 위반 등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일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안은 이러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외에 징역형·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고액의 금전상의 제재를 중복적으로 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벌금형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과징금은 단독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면서도 벌금형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 부과된다는 점, 벌금형의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과징금의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국민이 행정청이 재량을 남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사법구제를 받게 되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칙 또는 과태료로는 공익상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민에게 커다란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과징금을 행정편의를 위해 위법행위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6조에서 제한·금지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한·금지물질의 함량, 제품 내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으나 안 제3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신고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위원회 대안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장외영향평가제도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현장조정관 파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7조는 행정명령 위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또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이득의 발생이 불법성의 중심이 되거나 이러한 부당이득을 벌금을 통해서 환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항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도입이 적절한 행위유형이 아니므로 입법체계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36조는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을 영업이익이나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아니라 총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들에서는 일정액을 상한으로 하거나 위법행위와 관련된 영업이익 또는 해당 거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3% 수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결여할 정도로 너무 과중한 수준이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31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업무를 도급하여 준 경우 이 법에 따른 수급자의 위반행위는 도급자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까지도 수급인의 위반행위가 도급인의 행위로 의제되어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수긍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형법에서도 특정범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단기 3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폭발물과열치상죄나 상해치사죄와 같이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라는 점, 다른 법에서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이 너무 과중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제명 및 전부 개정으로 인해 다른 법률에서 동법 및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누락된 경과조치 등을 반영하고 중복적 벌칙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6항의 법률안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은 검토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수정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권성동 위원** 환경부에도 물어봐야지, 동의하는지.

○**김학용 위원** 그러니까요.

○**권성동 위원** 환경부장관한테 물어봐야지.

○**김학용 위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8항 위원회 대안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적으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 법률안이고……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4항입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어제……

○**김학용 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44항,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43항이네요?

○**위원장 박영선** 예.

○**김학용 위원** 44항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입법인데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소위로 넘겨서 위원회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선** 장관님, 의사일정 제4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의견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더 있는데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8조인데 안은 제조·수입·사용·판매라고 하는 사용까지 포함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자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수입·판매자만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이거 양해가 되신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30조 하위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는 제10조의 등록 이행에 대한 것만 들어 있는데 제8조제1항에 의한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2조에 법사위 수정의견 부분을 수용하는 내용이지만 각호를 본문에 집어 넣으면서 단서로 집어 넣어 가지고 각호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같지만 법사위 수정안 2호에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이것은 삭제하고 1t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이 가스나 액체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고체 형태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부처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문안이 지금 배포가 됐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박영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에 관해서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노위원님들……

○**김학용 위원** 이 정도로 많이 바꿀 것 같으면 소위로 넘겨서 같이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환노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또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가습기와 관련된 피해구제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가습기와 관련된 부분, 불산사고 관련된 부분 또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가 참……

○**권성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영선**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이 현장에서 법사위 수정의견 또 정부 합의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빨리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법에 불비가 있거나 또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2소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43항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환노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장님, 환노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것 좀 확인하고요. 일단 43항하고 44항은 지금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한 법이고요. 지금 43항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 논의는 조금 미루고요.

39항, 40항, 41항, 42항 그리고 45항, 46항, 4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 위원님!

○김희선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희선 위원 정년연장 관련 법안인데요, 법령이 좀 길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희선 위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은 뉴스를 보니까 53.7세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은 평균이 약 58세이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 등을 통해서 나가는 실제 퇴직연령은 53세 정도……

○김희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년을, 지금 규칙에는 58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60세 이상으

로 정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상하는 수혜자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관련해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수적으로 해서 50세에서 현재 54세인 분들 중에서도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거나 기간제를 제외하고 나면 약 7만 8000명 정도……

○김희선 위원 7만 8000명 정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이거는 사실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정년을…… 급속히 고령화가 되는 이런 추세에 당연히 이런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공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임금피크제하고 연계해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희선 위원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그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노위에서 제19조의2라는 규정을 뒤 가지고……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강행규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하여야 한다……

○김희선 위원 강행규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나와 주실래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김희선 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년 연장하는 제19조 규정도 강행규정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김희선 위원 60세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만약에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강행규정이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다음에 제19조의2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는 게 강행규정이라 말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만약에 제19조의2 사업주하고 근로자 간에, 노동조합 간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 논의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용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의 강행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것을 연기할 방법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선 위원 그러면 강행규정이 아닌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제19조의2는 사실상…… 법문의 내용상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이번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희선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것도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19조의2의 조항에 따라서 그런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가 된 사업장에 한해서 제19조제1항이 적용되는 그런 규정을 두면 그게 공약사항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년 60세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 사업장만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노사의 자율교섭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사업장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교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섭을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통해서 분쟁해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선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제19조의2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한 취지가 굉장히 바래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제가 알기로는 환노위에서 정년연령을 인상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각 기업의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쳐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선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이 논의는 다 함께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마이크 좀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김희선 위원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법률안에 있는 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임금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조정이 포함되는 의미로……

○김희선 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될 것이고, 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노사 간에 기업의 사정에 맞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교섭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위원 그런데 노사협회가 결렬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이게 행정절차니까……

○김희선 위원 중재로 또 가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중재로 들어가게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지방관서의 행정지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들을 지금 저희 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하고 관련해서 정년 60세 정착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들로 설치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원체계들을 확립해 나가고, 또 실제로 201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기업현장에서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노동부장관, 좀 더 이걸 분명하게 해 보지요.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도 같이 병행 내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 지금 이 정년연장의 기본취지가 몰각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대로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고 제19조의2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삽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철 위원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조정도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체계 개편에 이 조문을 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환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18년 넘어가면, 2025년경에는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 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1세부터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초기 입직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생애임금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늘어난 정년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법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규정을 했고,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했지요? 이걸 하기 위해서 노사정……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가칭입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예, 가칭.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년 60세 정착위원회인데, 이걸 가칭입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노사정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정이 포함되고 전문가들도 포함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해철 위원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들을 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만해라, 그만.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해요. 나가 버리면 결의도 못해.

○최원식 위원 나가시면 안 되지.

○전해철 위원 아니, 이거 결의하고 가야 돼. 서위원, 잠깐만 결의하고 가.

○이춘석 위원 결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환경부장관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지금 제출된 법률대로 하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산업계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37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45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오늘 언론을 보면 세 가지 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오늘 오전에 통과된 법. 그다음에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지금 논의되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어제 경제5단체의 부회장들이 와서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만나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걸 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 달라 하는 내용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6년째 하지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경제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봤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경제민주화법이 후퇴하고 있고, 이 후퇴하는 시점을 떠나서 경제단체가 자기들의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는 경제민주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역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장관님들께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환경부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여기에서 그냥 눌러앉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재계에서 로비를 하니까 국회가 굴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 경제계의 논리를 대변해서 이 법이 소위에 회부되거나 통과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해서 사실 우리 법사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계에 우리 국회가 굴복했다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회의에 뒤서 이것을 사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해서라도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43항과 44항을 말씀……

○**이춘석 위원** 44항, 45항.

○**전해철 위원** 45항은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를 더 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춘석 위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면 45항은 별개로 해야지요.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이춘석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주 정치공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자존심을 아주 몽개는 발언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도 국민이고 중소기업도 국민이고 대기업도 국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민들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대기업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국민이 면담요청을 하면 그것이 일반 서민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 줘야 될 의무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중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또 44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 2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위원도 오늘 검토보고서 중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재계가 반대했다고 해서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장관조차도 수정안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법안이 정부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노위 주도로, 환경부 주도로 이 법안이 성안되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박하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주장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항에 대해서도 우리 김희선 위원께서 강행규정과 강행규정이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슨……

1분만 발언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 이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을 폄하하는 듯한, 재계의 요구에 굴복해서 마지못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런 주장은 동료 위원으로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경제5단체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어디에도 우리 김희선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순수한 법률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논리를 갖고 마치 경제단체의 사주를 받아서 주장하는양 이렇게 동료 위원을 폄하하는 이런 회의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과연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안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이 3개 법안을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말고요.

○서영교 위원 표결하려고 여지껏 기다렸는데……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뒤에서)

동료 위원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해철 위원 자, 이야기 들으세요.

이야기한 대로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약간의…… 점심때나 정회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지금 몇 건을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가져왔지만 환노위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하면 충분히…… 바로 될 수 있으면 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논거를 안 대지만 워낙 전문위원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론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얘기대로 시간을 주고 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사실 아시지만 이게 정무적으로 또 대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사실 김희선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리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전혀 절충이 안 되는 건지 여부를 확인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 법안을 좀 분리해서 대응하든가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김희선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 45항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률 2소위로 보내자는 의견……

○김희선 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최원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한마디……

○위원장 박영선 아니,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이춘석 위원 존경하는 권성동 간사님이 화가 많이 나서서 나가시고 또 김희선 위원님도 나가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라든가 그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뭘 해서 굴복한다는 취지가 아

나라 어제 경제5단체가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계속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그러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재계에 굴복하는 뜻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발언하신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위원들의 어떤 발언의 내용 또 로비, 그런 부분들로 이해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야당의 간사로서 이 일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 44번은 전문위원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45번은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타협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 법이라도 통과가 돼서 밖에서 언론들이 볼 때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는 우리 국회의 모습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저도 정년연장법인가요, 고용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선 위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책이 생기면 어느 정도 연결 고리를 두거나 아니면 '2016년까지 임금보장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이 정도 조항이 들어가면 제가 이춘석 간사하고 별도로 논의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수정해서 저도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사위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 것처럼 자꾸 동료 위원들을 의심하면서 정치공세를 퍼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정치공세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춘석 간사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5항 법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

르는 노동 쪽 정책이나 아니면 노사 합의는 사실은 딱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앓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법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 주고 나머지는 노사합의를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선례가 있습니다. 원래 주 4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했다가 4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해석이랄지,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사실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임금은 안 줄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노사랑 법원의 해석에 맡긴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2016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여기서 규정을 해서 노사 간의 그런 협의를 줄인다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좀 감안해 가지고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새누리당 위원님 중에 오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는데……

○권성동 위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따 오후에 의결하면……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45항에 대해서 일단 의견 조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 있지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사님들이 의견 조율해 주시고.

국가재정법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재위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국가재정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재위의 의견을 살리면서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헌 소지 여부 부분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세금과 관련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지금 날짜가 다른 거예요.

○권성동 위원 그 날짜를 맞춰 줘야지요.

○위원장 박영선 아니, 그런데 하나는 안행위 법이고 하나는 이게 기획재정위원회라 상임위가 달

라요. 그래서 그것도 점심시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날짜를 맞추는 게 별로 의미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적용……

○전해철 위원 세금이 틀리니까……

○위원장 박영선 예, 세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취득세고 하나는 양도세라서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권성동 위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뭐.

○위원장 박영선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들을 설득해서 사실은 맞춰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에 와서, 지금 영문을 모르는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걸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간사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3항과 44항은 제가 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43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수정할 게 많기는 한데 장관님과 환노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됐다고 장관님은 주장을 하시고, 지금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건 사실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당 간사님이 수정안을 들여다 보시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44항은 새누리당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수정 가결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2소위에 보내서 뭘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44항 유해화학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 아까 전에 2소위로 넘기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선 그냥 넘기자고만 했지, 어떤 부분을 뭘 어떻게……

○권성동 위원 아니, 아까 넘기자고 주장한 부분이 전문위원 수정안……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전문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수정하자는 입장인가요?

○권성동 위원 그렇지.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 44항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지 두 분이 좀 의견 조율을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43항처럼 이렇게 수정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이게 법사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인지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하실 일들이 많습시다.

○권성동 위원 점심 먹지 말라는 얘기지……

○위원장 박영선 (웃음)

하셔서 이걸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은 사실은 제가 가결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식사하시고 두 분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제목이 ‘법사위 많이 컸다’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새누리당 의원이 서로,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욕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 새누리당이라는 의원들이 싹 빠져 있어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법사위원장이 뭘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화일보에다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류됐던 환노위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제44항, 제45항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양쪽 간사님들의 의견조율을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의 조율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박영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그것은 조율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박영선 어떻게 양 위원님들 얘기가 다른데요. 저 조율 안 하시면 법사위 진행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지금 전부 다 왜곡 보도되고 있고,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발목 잡은 것 하나도 없고요. 법사위원장인 제가 발목 잡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절충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신문 문화일보 기사는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뭘 잘못해 가지고 지금 모든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간사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피해를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점심시간에 이 부분에 관한 조율을 부탁했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43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께서 ‘야당 법사위원하고도 논의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 대안으로서 우리 전문위원이 만든 수정안을 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 진행하시지요.

○이춘석 위원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자, 그러면 또 장내를 정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의견 조율을 새누리당 내에

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박민식 의원, 김성태 의원이 ‘법사위 많이 컸다’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요. 다 새누리당 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국민들이나 또 독자들한테…… 마치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기사를 써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요. 제가 이상태로는 법사위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위원님들 새누리당 의견 조율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새누리당 내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갖다 통과시키는데 마치 무슨 민주당이 뭘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바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언론이 대낮에 지금 코를 베어가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기사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예,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언론에서 저는 기사를 못 보았습니다. 못 보았고, 제가 오전에 이의 제기를 했던 자본시장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무위원장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했기에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가…… 지금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냈기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전혀……

제가 지금 대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기사가 그렇게 났고 또 개별 의원께서 바깥에서 언론을 상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는 저희들이 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장내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겠다 하니 잠시 하시고 저희들도 또……

○위원장 박영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후에 난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앞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법사위 욕하는 것만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름이 짝 거론이 되면서 마치 그 기사를 읽어 보면 민주당 법사위원이나 법사위원장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옆의 기사는 또 민주당이 무슨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율해 드리려고 도와 드리는 입장에 있는데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하셔서 장내 정리하고 다시 법사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의논을 하고 위원장님이 가지시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간사를 통해서 속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예요, 어제 오늘 관련해서 물론 기사도 문제지만 확인을 또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주요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이야기가 안 됐든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6인 협의체 또는 원내대표단, 수없이 많은 절충과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그 합의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거나 정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 법사위가 마치 무소불위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제가 어제하고 오늘 또 느낀 것은 여당이 오히려 정부 입법이나 정부가 해 왔던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지지하고 여당은 문제 삼는 이상한 모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사에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그동안 이번 임시국회 때 해 오던 경제 민주화의 큰 뜻이

전혀 훼손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꼭해될 때 아마 위원장께서 굉장히 감정도 상하시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여기 문화일보에 난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마치 어제 하도 급법 그것을 우리가 발목 잡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은 딱 적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냈는데 이것 지금 문화일보에 ‘법사위가 당 지도부냐’ 이렇게 난 것은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을 대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냈는데, 실제로 늘 있어 왔던 우리 법사위의 역할 한계에 관한 이런 것들……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 것인데, 그러면 뭐 이런 정도의 논란도 없이 언제부터 그냥 우리가 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 당 내 조율을 해 가지고 나와라’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영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진태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지금 그러신데요. 양당 간사가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금융위법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때문에 법사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조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법사위를 개의를 했는데, 개의하자마자 또 아니라고 하니깐 새누리당 내 또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조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일단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까지만 얘기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인데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없었어요, 와서 문제 제기는 하고.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해 놓고 정작 중요한 뎀 아무도 없고, 저는 어제와 오늘만큼은 다른 법사위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집중하고 있고,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면서 이제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처럼 하고 있다’ 저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어제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와서 문제 제기하고 싹 빠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서로 개인을 놓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겁니다.

왜 6인 협의체까지 가서 다 합의해 놓고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하고 대통령이 전부 추진하고 그래서 정부의 모든 관료들 국무위원들 저렇게 많이 보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한 개인의 뜻으로 막고 넘기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조금 더 숙려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 개인의 의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친이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에서 그렇게 조절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원활한 효율을 위해서,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절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이거 합의된 건데 통과시키게 할 테니까 좀 여유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오니까 다 합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도대체 지도부도 없는 건지……

저는 지금이 평상시 법사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좀 더 깊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좀 확실하게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선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아는데요,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됐던 환노위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제44항, 제45항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일단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김희선 위원님 발언하셔도 되지요? 아니면 먼저 하시겠어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 먼저 하시지 그래요.

○위원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희선 위원 서초갑의 김희선 위원입니다.

회의가 많이 지체가 돼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제 신상발언 비슷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대방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가급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저분이 대개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저런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고 가급적이면 좀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끔은 저의 생각을 상대방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 본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법사위가,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 내

에서도 다른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평생을 제가 법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정말 오래 가는 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단 법을 만들면 법전에 있는 수많은 법 중에서 과연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준 거고.

또 여기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 법조인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 법사위가 그런 부분에서 법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왕 법을 만드는 경우라면 국민들한테 좀 더 떳떳한 법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시듯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법을 만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나라한테 창피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1분 이내로.

○위원장 박영선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법사위가 정회 소동이 벌어졌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은 김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졸속한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 야당 법사위원들이 볼 때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보면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사위라고 하는 게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가지고 만장일치돼서 통과되어 온 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 체계와 자구 심사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발목 잡는 것 아니

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 체계·자구 심사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여야 위원들께서 지금 서로 다 예민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우선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나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였지 벗어나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4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또 해당 부처인 환경부의 수정안이 비교적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그 두 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2소위로 넘겨서 좀 더 논의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문 내용 중에 '임금체계 개편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정안 19조의2제2항을, 지금 개정안은 정년 연장 사업장에게만 인센티브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정년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등, 소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을 대신해서 지금 노동부차관님이 와 계십니다.

○권성동 위원 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박영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권성동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위원장 박영선 정현옥 차관이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권성동 위원 ‘임금체계 개편 등’에는 임금 삭감, 임금 조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 부분……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리고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위 때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수차, 야당 위원님조차도 이것을 확인해 주셨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 조정도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이 수정의견 받아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권성동 위원 이 19조의2제2항, 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용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법 해석에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법조문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개정안에서의 2항은 무슨 뜻으로 있었던 거냐 하면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고용지원금만을 넣었고요. 실제 여기 숨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규정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1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우리 풍토이다 보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또 임금체계 개편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적정 지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 관서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앞으로 대통령령에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

고 2항이 쓰여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의견의 2항은 거꾸로 그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을 이미 스스로 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전혀 다른 뉘앙스로 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성동 위원 아니……

○이춘석 위원 부칙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데요?

○위원장 박영선 지금 고용노동부차관님의 답변은 ‘임금체계 개편을 스스로 한 기업에 대해서만이 법이 적용된다’ 이런 답변입니다, 요지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법에 의거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이 하는데 아까 여러 분이 걱정해 주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지원에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고용지원금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컨설팅,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노사협상 지도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이 대통령령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원안이고요.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신 것은 거꾸로 스스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서 순서가 전혀 다른 얘기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처음에 이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부처 의견을 확인할 때는 동의를 했다가 지금 부처에서 갑자기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여야 간사님이 합의한 것들은 존중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정의견이 기본적으로 이 법을, 정년 연장에 대한 법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신장하고 지원·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장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미 기존에 시행했던 사람까지 돼 있어서 2항의 규정이 1항을 좀 더 장려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법사위에서, 이미 환노위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왔고 또 부처 장관도 그 법의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2항을 놔두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야 간사님께서 환노위도 원하지 않고 부처도 원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아무리 법사위 전문위원이 잘 안다 하더라도 기존에 환노위에서 해왔던 것을 들어 보면 상임위, 부처장은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개정안대로 그냥 가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선 위원님!

○김희선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의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애시당초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그냥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업 사정도 같이 고려해서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을 전제로 해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게 당초 공약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다 강행규정으로 넣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60세로 연장하는 것도 강행규정으로 넣고 또 필요한 그런 임금피크제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안 썼지만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한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것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키도록 이게 이 법에서 다 나타나는데 두 번째 임금피크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됐든지 해 가지고서 임금체계 개편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이 법에서 당초 입법자들이 생각했듯이 그냥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같은 것은 사실상 조문만 하여야 한다고 했지 아무 쓸모도 없는 임의 조항이 돼 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당초 입법의 취지가, 그 2개 다 같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적 달성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전해철 위원 알겠고요.

잠깐 이야기드리면……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김희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1항 후단 부분 임금체계 개편 역시도 가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또 그게 강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2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1항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시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노동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최원식 위원도 얼핏 이야기드렸던 대로 모든 강행규정을 처벌이나 또는 어떤 벌칙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주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강행규정 자체로 해 가지고 그 시행을 국가나 기관이나 국민이나 이렇게 하는 법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이게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체계를 바꾸어 버리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수정안 만들었던 것조차도 고용노동부 이야기대로 오히려 지금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시고 다만 이런 취지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노동부가 잘 시행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차관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하면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법안의 부칙에 보시면 이 법이 공포된 후로부터 일반적으로는 1년 이후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 겨냥한 것이냐 하면

19조의2제2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은 강행화되지만 그 전이라도 정부가 각종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미리 충분히 노사로 하여금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도록 장려 내지는 촉진하는 사업은 미리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로 미뤄 놓은 것이고요.

따라서 원래 2항은 뜻이 아무 때라도 정부가 준비되면 바로 정년 연장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었는데 지금 2항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리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정부가 미리 어떤 작위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2항의 뜻은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는 임금체계 개편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이미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춘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러면 사실은 시행 시기가 19조의2제2항이 먼저 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안 해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주는 게……

아, 오해하신 부분이 아마 고용지원금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수많은 해야 될 일의 한 예시이고요. 고용지원금을 아무나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대통령령에 정할 것이지만……

○이춘석 위원 대통령령에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경우에만 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 좀 더 들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임금체계 개편의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한테는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해 줄 것이고요. 고용지원금은 노든 사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노사에게 자율적으로만 맡겨 놓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같은 데는 한 푼도 임금 조정을 하지 않고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정년을 부담해야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중소기업같이 노조도 없고 사업

주가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마구 정년을 핑계로 30%씩 임금을 깎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지금 개정안의 취지나 수정의견의 차이나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이 수정안은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수정안에는 다른 점이 '제1항에 따라'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라'라는 이 제약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들어보기에는 대통령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위원장님, 뭐가 거기서 크리티컬한 것이냐면 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한 조치는 1항에 보면 딱 한 가지거든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체계 개편을 이미 어떤 사업체가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했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했던 임금체계를 개편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모든 임금 문제를 해소한 기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부가 특별히 해 줘야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선 아니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했던 내용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기업에 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품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체계 개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춘석 위원** 그러면 스스로 한 기업들한테는 아무 인센티브를 안 주고 강제로 따르는 데만 주겠다는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기업, 할 수 있는 기업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2항인데……

○**권성동 위원** 아니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개정안인데 수정의견에 따르면 한 기업만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업에만?

○**권성동 위원** 인센티브를 한 기업에 줘야지 하지도 않은 기업에 왜 줍니까, 도대체?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인센티브만, 대통령령에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수정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지금 하신 말씀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은……

○**위원장 박영선**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이걸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김희선 위원님은 지금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이걸 강조하시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넣어드리고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 개편 조치를 동시에 한 사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용……

그러면요, 차관님 이렇게 바꾸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

니까?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정년 연장과……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다 들어갑니다.

○**권성동 위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람은 돈을 주고 정년 연장만 한 기업에는 컨설팅 등 다른 용역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문제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런 것이지요?

조치를 스스로 알아서 임금체계 개편을 한 데는 전적으로 물적인 지원을 하고 지원금 같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기업에 돕는 것은 서비스 쪽으로 할 수 있도록 2개를 합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이시지요?

○**권성동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위원장 박영선** 예, 위원님들……

○**권성동 위원** 전문위원 이해갔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부처하고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빨리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박영선**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소위원회는 5월 6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3항까지 그리고 제45항, 제4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상용 전문위원님, 지금 문제가 됐던 문구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여야 간사한테 보여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노동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법을 의결하기 전에 잠깐만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은 법이 1건이시니까 먼저 오셔서……

금융위원회 아까 자본시장……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5시48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도읍 위원님 간에 서로 합의를 보셨다고 하니 김도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대체거래소가 지금 설치될 근거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그래서 인가 기준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님 아침에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의 요지는 설립 인가가 낱말이 될 경우에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과 그다음에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금융중심지와 충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인가 기준을 시행령에 두면서 시행령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두고자 합니다. ‘거래소의—그러니까 대체거래소가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

전을 위한 법에 따른 정책 방향에 부합할 것’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공성과 더불어서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그런 전문성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행령 작업을 하면 법사위에 아니면 또는 정무위에 또 김도읍 위원님한테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본사 영업소 재지를 금융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등과 연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한다, 확실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의 역할·기능 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규정……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읍 위원 들어가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금투업 감독규정·인가 정책 등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소 본사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운용 하겠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개정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연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

-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 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김영주·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 발의)
-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동익·배기운·문병호·민홍철·전해철·홍종학·이한성·안홍준·유재중 의원 발의)
-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5분)

○위원장 박영선 보건복지 법안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다리셨는데요.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으로 제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치과기공소 등에 대한 관리가 지역별로 보다 현장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시도감독 권한과 보고의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둘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그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제재에서 벗어나 부정행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자 중 대리응시자와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현행 2회에서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종합 요약본을 기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동 관계로 유인물상 안전 번호가 다소 다르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문의 문구를 정리하였고, 부칙에서는 개정규

정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한 법 개정 시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서 인증표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이 아닌지 또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취소 외에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법 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등 운용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은 일부 행정입법으로의 위임규정이 중복·저촉되는 것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경미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라는 제목하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의 급여지급 보장 의무를 단정적으로 선언하면 국가의 부담 및 과급효과가 우려되고 유사 입법례 등을 이유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보장하도록 적극(또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조문의 제목대로 ‘보장할 책무를 진다’ 등등 여러 가지 수정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대안)입니다.

개정안의 형사처벌 조항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받게 한 것만 처벌하고 다른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문구를 ‘보험급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 사이에 실효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원 취지에 따라 부칙규정을 정리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박영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우선 3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반적인 법 형식을 보면 뭐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대부분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연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정이고.

또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런 국가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통과된 후에 재정당국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재정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혹시 국가부채가 올라가서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2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폐지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님, 이 지방의료원 설립·폐지는 국가사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방 고유 사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지방……

○**권성동 위원**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관여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규정한 헌법 원리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장관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대안) 할 때에 여야가 하신 토론의 내용들 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 내용 안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최원식 위원** 그 당시에 여야가 ‘노력하여야 한다’ ‘보장한다’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의 여야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저희가 손을 댈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의 어떤

예산 부분과의 관련도 다 검토하고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장한다’ ‘보장하여야 한다’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까지 가면 그것은 완전히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의 합의를 뒤엎고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있어서도 당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깊은 논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폐업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해산까지도 포함시킨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그것은 안 된다. 해산은 제외하자’ 그래서 폐업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님, 평소 업무 중에서 지역 보건의료가 보건복지부 업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그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이유는 공공의료가 그만큼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을 설립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원래 원안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전 협의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렇게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의료도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권 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양자의 균형을 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또 지원도 해 주니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최원식 위원** 당연히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협의권 정도야 그렇게 큰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인데.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더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

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칫하면 법률 만능주의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지적과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입법에 대해서 국가의 부담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좋은데 이게 정말 다 소화가 될지 하는 우려도 많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실상 나중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 놓을 때는 좋은데 지켜지지가 않으면 결국은 또 이 법 자체 준법의식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허베이스피리트 특별법에서 처음에 올라온 안이 ‘사회적·도의적 책무를 진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낀센스 같은 이런 법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정을 보았을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안 자체도 보장한다는 게 약간의 의무적인 성격이, 뉘앙스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그렇게 큰 변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같은 취지의 발언은 가급적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위원님들,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법사위원님들도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국민연금법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의 지급을 보장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민연금을 다 냈는데 고갈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받지 못하나요?

그동안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냈고, 나라에다 돈을 냈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해서, 어차피 지금 진주의료원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병원급들이 비영리로 공공의료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

려운 절차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에서도와주어야 한다, 같이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수준을 지켜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지금 의사일정 제36항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권성동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선** 맞다니까요.

○**김도읍 위원**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성동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성동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이고 우리는 국가는……

○**서영교 위원** 돈을 냈으면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위원장 박영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반대합니다.

○**서영교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서영교 위원** 반대합니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님이 한 것처럼……

○**위원장 박영선** 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 허베이스피리트호도 그랬고 저희가 있는데……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도……

○권성동 위원 그러면 2소위로 넘겨서 계속 논의합시다.

○서영교 위원 이것 2소위로 넘기지 말아 달라고, 여기 또 법안이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최원식 위원 본회의에 한번 스테이하는 게 어떨까요?

○김도읍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보장책임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의무를 진다'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지금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아니, 동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아니……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36항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최원식 위원님 반대하시는 것으로 의견 달아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도 반대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다시고요.

○김도읍 위원 의결하는데 민주당 위원 다 어디 갔어?

○위원장 박영선 지금 본회의장에 투표하러 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에 가 있어요.

○김도읍 위원 저희들은 뭐 본회의장 안 갑니까?

저는 아까 오전에 계수 조정하고 있었습시다.

○권성동 위원 이춘석 위원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영선 빨리 한 분 오시라고 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장관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태 위원 아까 들어 보았잖아요.

○권성동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서영교 위원 ‘노력한다’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36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야 간사 간에 수정하는 상황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로 보내기로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께서 2소위로 보내자고 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야 간사 간에 5월 6일 본회의 전에 2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서로 약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기록을 하는데……

저희는 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하다, 긴급하다라고 하는……

아, 죄송합니다. 발언권 주시면……

○위원장 박영선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긴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법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진주의료원 때문에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급한 사항이 있는 지방의료원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기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라면 저희도 크게 막 반대를 떠나서인데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래도 야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는 아주 큰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해합니다.

○권성동 위원 2소위에서 논의하면 되지요.

○최원식 위원 2소위로 가지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권성동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다 일괄 통과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박영선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27항에 대해서는 2소위로 보냅니다마는 소수의 견으로 해서 서영교 위원님 또 최원식 위원님 그것은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항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해서 본회의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의사일정 제6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61항은 지난번에도 상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을 원래 4월 달까지 처리하기로 기재부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약속한 차관님이 지금 저 뒤에 와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6월 달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처리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

○위원장 박영선 장관님, 영유아보육법 이것……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6월 달에……

○위원장 박영선 예, 현금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국고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것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위원장 박영선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항상 정하는 것이고요. 장관님의 의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 무상보육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국민께 약속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차관님, 지금 들으셨지요, 예산 담당 차관님?

이석준 차관님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예.

○위원장 박영선 좀 나와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영유아보육법 20%p 보조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연 1.4조 원의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가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 내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시다만 이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6월 달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월 달부터 4개월 동안에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이 정부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과 차관님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공약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공약을 지켜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0%p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제6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냥 전체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

정 제6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권성동 위원 내용이 뭐지요?

○위원장 박영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고의·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어린이집과 관련자의 명단을 공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동익·배기운·문병호·민홍철·전해철·홍종학·이한성·안홍준·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16시29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8항, 30항부터 제33항까지,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27항의 경우에는 제2소위로 회부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그리고 제35항부터 38항까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 국민연금법 그것은 지금……

○위원장 박영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료요?

○위원장 박영선 예.

○전해철 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영선 확인 다 했습니다.

아까 안 계셨는데……

○전해철 위원 아니, 이춘석 간사하고…… 전혀 그 취지가 틀린 것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선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해철 위원 한 번만 보류하시지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전해철 위원 아니요, 노력하자는…… 말이 틀려요.

그것 이춘석 간사에게 직접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전해철 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잠깐 보류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이춘석 위원이랑 제2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 봤어요.

○정갑윤 위원 2소위에 넘겨. 다음에……

○전해철 위원 아니요. ‘노력하여야 한다’로 합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권성동 위원 2소위로 넘겨요.

○전해철 위원 ‘2소위에 넘긴다’ 이것을 이야기했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권성동 위원 아니, 수정 문구를 해 주든가 아니면 2소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었어요.

○정갑윤 위원 2소위에 넘겨주시요. 합의하면 되잖아요.

○최원식 위원 2소위로 가야지.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36항 빼고 의결을 할게요.

○전해철 위원 예, 이것 좀 빼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제28항, 그리고 30항부터 3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6항은 지금 조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영선 28항, 30항 그리고 33항 그리고 35항, 37항, 3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31항에서 아까 검토의견을 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벌칙을 두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면 87조에서 4호와 5호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은 바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정부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검토보고에서 이게 ‘처벌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해 보면 처벌규정을 두는 게 좋다면 이렇게 처벌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 의견을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2소위로 가지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니까 한번 2소위로 보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이 많아서 보건복지위원회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장관님께서 더군다나 판사 출신이시니까 앞으로 좀 검토를 잘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마다 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와 가지고 갑자기 고치려고 하면 여기 지금 혼선이 생기고 준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제시……

아,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정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소위로 넘겨서, 며칠 있다가 소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같이……

○위원장 박영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며칠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다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복지부가 수정의견을 내실 것이면 저하고 여야 간사분들한테 일단 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법을 올려야지 여기에서 즉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법이 졸속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경우에 의견 수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법무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국일 제가 복지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담당관이세요?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좀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전혀 상의가 안 된 사실인지 몰랐는데, 저는 상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된 줄 알았고 그래서 그냥 잘못 넘어갈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런 안을 하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하지 않지요.

○**위원장 박영선** 예.

그러면 31항은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28항, 제30항 그리고 삼십……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몇 항 ……

○**최원식 위원** 31항.

○**위원장 박영선** 31항 맞지요?

제33항, 35항, 37항, 38항의 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부를 때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소위로 넘어갈 안건은 31항과 27항입니다.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항은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전해철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춘석 간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노력하여야 한다’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방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노력한다’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복지위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몇 군데 입법례도 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나온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바꾸지 말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원안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보장하여야 한다’로요?

○**전해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춘석 간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춘석 간사가 없는 자리에서……

○**전해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통화를 했어요.

○**권성동 위원** 이춘석 간사는 분명히, 여기 새누리당 위원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 주든지 수정을 안 해 주면 2소위에 넘어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해서 일괄해서 다 패키지로 합의가 된 겁니다. 제2소위로 넘기십시오.

○**전해철 위원** 그 부분은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춘석 간사가 2소위를 이야기했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27항, 31항, 36항을 2소위로 회부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항, 31항, 36항은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9항, 제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6시31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 의사일정 제61항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요.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계속)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아까 점

심시간에 계류되었던 그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장관님 오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일단 앉아 계세요.

오전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됐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월 1일로 그렇게 시행시기를 바꾸는 것으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장관님 오셨는데, 오셨으니까 앉으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세금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의결한 날에 의해서 보낸 것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장관님과 차관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연유를 모르는 법사위원님들 앞에 와서 이것을 통일시켜 달라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4월 1일로 소급적용하면 혜택 받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재정이 수반되는 법들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반드시 법안심의에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서 해결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이거 안 받아

들일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저희도 가급적이면 상임위에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과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글썽, 그것도 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법사위원들 괜히 여기저기서 ‘무슨 상원 노릇하니’ 이런 지적이나 받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꼭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기재부차관님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장관님께도……

금방 박영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지역에 많이 가 계실 여유가 없어서, 저는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에 있으면 모든 예산이 영유아보육법 예산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안 나와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모든 예산이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은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할 수 있게 예산을 풀어 주셔야지요, 아니면 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요구하시든지. 법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재정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전체 국정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간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위에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과거의 법사위처럼 이 부분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지 않으면, 아까 6월까지 내신다고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입니까, ‘하겠다’입니까?

‘노력한다’가 오늘 많이 이슈가 되는데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장관이 바뀌고 차관이 바뀌면서 또 다시 나 몰라 하면 밑바닥은, 풀뿌리는 전부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꼭 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재원을 쓰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 간에 재정배분에 대한 논의를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법사위에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마련,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했고요.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김기선·유승우·박덕흠·金永柱·윤재옥·황영철·고희선·강기윤·이찬열·유대운·백재현·박남춘 의원)

66.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6시33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유정복 안행부장관님!

의사일정 제6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66항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지방공

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를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6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재산세를 감경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이어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이상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의사일정 제65항 박성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양 법률에서 규정하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규

정을 삭제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위원회 대안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춘석 위원 거기에서 지방행정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춘석 위원 이게 법적 성격으로 따질 때는 자문기구입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자문기구보다는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 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자문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독립된 행정기관은 아니더라도 약간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정도에 머물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하는 지방에서의 의견 또 자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 자문기구로 되어 있더라도 이 권한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시행과정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

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격시키는 것은 어렵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지만 이게 법률적 기반을 갖고서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일반적인 행정 자문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자문기구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께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64항, 제6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6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정복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세연·유일호·안홍준·한선교·김용태·신동우·윤상현·이우현·정두언·송광호·李宰榮·박대출·김동완·이노근·주영순·정우택·박창식 의원 발의)

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영록·노철래·김춘진·정문헌·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주영순·정희수·하태경 의원 발의)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9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오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해 특허 등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급하는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및 이에 대한 표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위원의 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제21항의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차구를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상임위 법안입니다.

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유대운·김승남·김성곤·이윤석·민홍철·배기운·신장용·박기춘·정청래 의원 발의)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현승·이명수·이종진·함진규·홍문중·이이재·이노근·윤진식·김태흠 의원 발의)

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주송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업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가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 개발이 가능한 경우 330만㎡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시 총 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 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총 매립비에 양도·양수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의 양도인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3조제7항 후단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임차후주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을 민법상의 지상권 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도록 하여 토지이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였고 관리소장의 임대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불필요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2항, 제53항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장관님, 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법이 공유수면 매립법, 그러니까 농해수위의 담당 법인 공유수면 매립법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서 형해화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공유수면 매립법이 기본법이고 이번에 올라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그 공유수면 매립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 법이 제출되어야지 안 그러면 농해수위의 입법권을 침범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소위로 넘겨서 양 위원회의 입장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아마 그래서 안 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앉으시고요,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마이크를 이쪽 것을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업도시 활성화 취지에는 우리 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수면의 투기와 방지 등을 위해서 총 사업비 범위에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매립제도의 근간을 흔들는 것으로서 우리 부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그것이 수정의견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약간……

수정의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어떻게 수정의견을……

수정의견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우선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동안에 국토해양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 조율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장관님들 두 분이 다 선임 장관이시라서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번에는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견이 있는 법은 미리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사위에 오시기 전에 사전에 좀 수정을 하시고 의견 조율을 하셔서 저하고 양당 간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 5월 6일 전까지 이것 서로 의견 조율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 관련해서 그동안 즉 상임위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쪽에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이것이 법사위에 오면서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할 만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이 법사……

○**위원장 박영선** 해수부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분께서 5월 6일 전까지 이것을 수정의견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조율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의견이 많이 달라서요, 저희 생각에는 매립면허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디를 매립했을 적에 매립한 것 전체를 가지고 하는 케이스라면 인정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어차피 개발 이익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들어간 비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갖고 가는 상황에서, 비용에 따라서 토지를 갖고 가게 되는데 매립면허권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구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립면허권만 1100억입니다. 그런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개발사업, 매립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매립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소위 회부 결론 전에 하시면요, 제가 알기로도 해수부의 의견을 피력 안 한 것이 아니고 피력을 한 것에 대해서 거꾸로 교통부에서 다 의견을,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부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가 되면 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매립지 소유할 때 초기의 매립지에 관한 비용을 환산해 가지고 나머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립지에서 어느 정도를 개발하신 분들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시 국가로,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돼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먼저 다른 분이, 개발하는 분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적에는 이득을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이득을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저희 쪽에서 나중에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많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 귀속이 적어지든 아니든을 떠나서요, 공유수면 매립이 이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른 입법례라고 하지만 입법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되는 것은 예를 들면 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도 한 2개 정도만 적용되는 게 있고, 방금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양도 이익에 포함되는 게 과다하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땅을 줄 때. 그래서 이 매도인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실질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냥 해수부에서 ‘협약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서 많이 논의됐던 것을 반론 사항도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수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이 법이 양도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땅을 가져갈 때 실질화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이 무조건 협약이 없다, 또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더군다나 개정안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매도인의 범위를 제한

해 봤는데, 그냥 반대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매도인은 본래, 양도하는 이는 본래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할 때 이미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매수하는 입장에서 그 앞의 것의 이득을 보전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조금 약간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기업도시 특별법이면 일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의 특별한 그런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특례 조항에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법에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소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는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논점들이 이미 나와 있던 논점인데 그것을 법사위에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수부장관께서 좀 더 엄밀하게 하고, 더군다나 해수부의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는 재반론서가 있는데 그 재반론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협의를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빨리 많이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정렬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그러니까 매립비용은 다 보전이 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법상에 매립면허권이 권리로서 인정돼 가지고 그것을 비용에 포함시키지는 않게 돼 있는 것이지

요?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아니요. 포함되어 가지고, 먼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든 비용에 관해서는 그 비용만큼을, 매립했을 때 그 비용만큼의 토지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시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토부장관님, 지금 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매립면허권이 하나의 권리로서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박범계 위원**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양도비용, 그렇지요? 사고팔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것, 그와 같이 권리금…… 권리금은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 인접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그것까지도 총비용에 포함시켜서 넣자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정돼야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돼야지 사고팔고 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총비용에 포함돼야지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이 권리를 획득하고 또 권리를 사고팔고 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법상은 일반법이니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성격상 이런 페이버(favour)를, 이런 메리트를 줘야지, 이런 이점을 줘야지 그게 원래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장관님?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별개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면허를 받은 쪽은 사실 공공기관의 경우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거기에다

가 아까 말씀처럼 권리금을 붙여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의, 그것을 다음에 양수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전부 다 계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볼륨 량이 붙어오는 성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치면 되는데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매립법의 근간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소위 가서 한번……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다만 5월 6일 본회의 전에 두 분 장관님이 모범적으로 여기에 관한 의견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게요, 국토해양부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다가 해양수산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 갖고 이견이 있으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 다 무시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일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 분이 저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5월 6일 전에, 이번 주 안으로 이것 해결 가능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

○김진태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그냥 하지」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가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위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잘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최원식 위원 잠깐 다른 것……

○위원장 박영선 이것 일단 가결하고요.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최원식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선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국토부장관님, 4·1 부동산 대책 중에서 임대주택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임대주택법 20조의4제1항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38조의7제2항을 보면 이전에는 자격 확인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자 자격이나 아니면 주택청약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 관계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특정을 해 달라, 이번에는 일부 특정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이것 좀 특정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요새 개인정보보호가 있고 또 포괄위임 금지는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나가는 것보다 특정화하는 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것만 해 주시면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어차피 그런데 지금 특정은 안 했지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표현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러면 그 부분은 대통령령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되셨습니까,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이게 저는 좀……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몇 항이지요?

○최원식 위원 50하고 51항인데요.

○위원장 박영선 예?

○최원식 위원 50항하고 51항인데……

○위원장 박영선 오십몇 항이요?

○최원식 위원 50항, 51항이요.

○위원장 박영선 50항, 51항이요.

○최원식 위원 좀 상임위에다 보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제출하시면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러면 현재 것대로

하시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것은 빼는 것으로, 양쪽 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50항과 제51항 지금 최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17시02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62항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안건이고요.

이 안건 역시 기획재정부 이석준 차관께서 4월 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법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이것은 사회 안전망, 시설 투자 관련 부분이거든요. 사회 시설

투자와 관련된 SO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SOC와 관련된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든 지방세에서 지원을 하든 이게 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이 도로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로 필요한 돈이 5000억인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연 5000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글썄, 연 5000억인데 정부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나라 살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영선** 아니, 도로에 관련된……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특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유지와 보수 관련된 부분은 국민은 이게 지방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혜택 보는 국민은 똑같은 거거든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1년도에 도로법이 제정됐는데 도로법 제정당시에 국도는 국가가 지방도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으로 가르마가 타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국도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요, 지방도로는……

○**위원장 박영선** 아, 글썄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지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지정국도, 간선국도 굉장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 관내 도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국가가 가져가서 관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영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편안하지요, 누더기 도로가 안 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국가가 지원했던 지방도로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다시 재검토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유아 보육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과 어떤 재원 배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재정 원칙상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신설된 예산·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기로 했고 이 두 안건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분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재정특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좀 보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글썽, 새누리당의 당론 뭐 좋은데요. 이것은 아무튼 영유아보육법하고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얼마든지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국가가 관리하든 지방정부가 관리하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달까지는 제가 차관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지켜드립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핑계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다 끝나가니까요, 짧게 이야기드리면 지금 기재부차관님이 법사위에 처음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법사위에 와서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관 상임위에 다 통과됐던 것을 여기 법사위에 와서 그런 예산 문제를 다시 해서

곱씹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 장관님, 전·월세 상한제법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위원장 박영선 그거 6월 달에 처리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충분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것ियो, 국토교통부가 우려하는 폭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탁상공론을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희선	노철래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정갑윤	최원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나성린 이윤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문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현오석
제2차관	이석준
국방부	
장관	김관진
차관	백승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차	관	여	인	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
환경부장관		윤	성	규
고용노동부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옥
여성가족부장관		조	운	선
국토교통부장관		서	승	환
해양수산부				
장	관	윤	진	숙
차	관	손	재	학
교육부차관		나	승	일
외교부제1차관		김	규	현
통일부차관		김	남	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	현	재
병무청장		박	창	명
특허청장		김	영	민
중소기업청차장		김	순	철
공정거래위원장		노	대	래
금융위원장		신	제	윤